



관계부처
합동

보도참고자료

「아동 특별돌봄 지원금」, 추석 전 지급 완료

▷ 미취학 아동 약 238만 명, 초등학생 약 264만 명에게 계획대로 지급 완료

- 다만, 계좌정보가 부정확하여 지급받지 못한 일부 미취학 아동은 계좌 확인 후, 아동수당 10월분과 연계하여 지급하고, 9월 중순이후 입국·전학 등 일부 초등학생은 추석 후 빠른 시일 지급

▷ 중학생(약 132만명)은 준비된 학교부터 10월 8일까지 지급, 학교 밖 아동(약 16만)은 9.28(월)~10.16(금) 교육지원청 신청접수를 거쳐 10월 중 지급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,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9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「아동 특별돌봄·비대면 학습 지원금」 9월 29일 13시 현재, 502만명*의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지급 완료하였다고 밝혔다.

* 9.29(화) 13시 기준, 초등연령 이하 지급 대상 508만명의 99% 지급으로 9.29일까지 대부분 지급 완료 예정

※ (아동 특별돌봄 지원)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 지원 (비대면 학습지원) 원격교육 등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 지원

- 교육부와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지속·가중된 양육·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, 지급 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, 각각 최적의 지급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하고 있다.

- 그 결과, 9월 29일 13시 기준 「아동 특별돌봄 지원금(1인당 20만원)」은 미취학 아동 약 238만명은 아동수당 계좌로, 초등학생 약 264만명*은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보호자 희망계좌로 지급을 마쳤다.

* 초등학교 학생 269만명 중 9.29(화) 13:00기준 98%지급으로 9.29일 중 대부분 지급 예정

※ 초등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사전에 학생·학부모 안내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희망자 조사·확인 등 조치를 기 완료하였음

- 다만, 부정확한 계좌번호, 9월 입국·전학 등으로 금번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일부 미취학 아동* 및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 확인 후,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.

* (사례) '20.9월 출생아로 아동수당 신규 신청시, 계좌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

- 「비대면 학습 지원금(1인당 15만원)」 대상인 중학생은 현재 학교별로 대상인원 파악, 학부모 안내 및 계좌정비가 진행 중으로, 준비가 완료되는 학교부터 지급을 시작, 10월 8일에는 대다수 중학생에 대한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

- 초등학교, 중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교 밖 아동(초등학령기 1인당 20만원, 중학학령기 1인당 15만원)은 교육지원청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16일 간 현장 신청·접수* 중으로 10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.

* 신청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

- 보건복지부 박재찬 아동복지정책과장은 “추가경정예산안 통과(9.22일) 후 일주일만에(9.29일) 계좌정보가 부정확한 몇몇 아동 외에 대부분의 미취학 아동, 초등학생에게 지급을 완료했는데, 이는 복지부, 교육부, 지자체, 교육청, 학교 등이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”라고 하면서,

- “동 지원금으로 아동가구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.”고 언급했다.

- 교육부 장미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“아직 지급받지 못하신 중학생, 학교 밖 아동도 조만간 신속·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.”고 하면서,

- “특히,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도 지자체, 교육청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,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변의 학교 밖 아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.”고 하였다.

붙임 1 아동 특별돌봄·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

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
- (대상) 670만 명* / 중학생 이하 아동('20.9월 기준 / 추경예산안 제출 달)
 - * ▲미취학 아동(약 252만 명), ▲초등학생 학령기 아동(초등학교 재학, 학교 밖 아동)(약 280만 명)
 - ▲중학생 학령기 아동(중학교 재학, 학교 밖 아동)(약 138만명)
- (지급액/예산) △(초등이하, 특별돌봄지원) 1인당 20만 원,
△(중학생 학령기, 비대면 학습지원) 1인당 15만 원/1조 2,709억 원

□ 추진 방식 : 보건복지부 - 교육부 협업

- 아동 연령, 학교 재학 여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 전달체계 활용
(▲미취학 아동수당 수급아동 → 지자체 / ▲초·중등학교 등 학령기 아동 → 교육청)

□ 지급방식

- (지자체) 미취학 아동*
 - * `14.1~`20.9월 출생아(단, 초등학생은 제외) 중 `20.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
 -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('20.9월 기준)로 지급
- (교육청) 초등·중학교 학령기 아동
 - (초등·중학교 재학생 아동*)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**
 - * 초등·중학교(국립·공립·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) 재학중 아동
 - ** 학생·학부모 안내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희망자 조사·확인 후 계좌 지급
 - (학교 밖 아동*)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받아 지급**
 - * 미인가 대안교육시설,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·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·중학교 학령기 아동 ('05.1~`13.12월 출생아)
 - ** 보도·홍보자료 등을 통한 안내 → (학부모)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접수 → (교육지원청) 증빙서류 확인 및 계좌지급

붙임 2 학교 밖 아동 신청 개요

□ 신청대상

- **초등·중학교 학령기**(‘05.1~‘13.12) **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**
 - ‘05.1~13.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·공립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**대한민국 국적 아동**
 - ※ 미인가 대안교육시설, 국제학교, 홈스쿨링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하며,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에도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 지급
 - 외국 국적 및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*인 아동 제외
 - * 아동수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 시작일(9.28일)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지급 제외

□ 신청방법

- **(기간) ‘20. 9. 28.(월) ~ 10. 16.(수) 기간 중 09시 ~ 18시 신청**
 - ※ 신청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
- **(장소)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**
 - ※ 우편 및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,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외에는 접수 불가
- **(제출서류)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, 보호자 신분증(확인만)*, 주민등록등본(동거인원 포함 표시,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, 통장사본**
 - * 주민등록증(본실 시 발급 신청 확인서)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
- 대리인 신청 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, 보호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(확인만) 추가
 - ※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,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), 시설입소 확인서(시설보호 아동),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(난민) 등을 제출받되,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
- **(지급시기) 서류 검증 및 보완 등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지급**